

반부패·청렴 관련 추진사항

2014. 8. 27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I. 현황분석	1
II. 추진방향 및 전략	2
III. 주요 추진과제	3
IV. 세부 추진사항	5

I . 현황 분석

□ 현 황

- (기관특성)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13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진흥업무의 미래부 이관으로 조직 및 예산 규모 대폭 축소
 - * 舊방통위 1,615명(소속기관 2개, 공공기관 3개) → 211명(소속기관 0, 공공기관 1개)
- (비리유형) 최근 3년간 수사기관, 감사원 등으로부터 금품, 향응 수수 등 부패·비리로 방통위 및 산하 공공기관이 적발된 사실 없음

□ 문제점

- (부패 유발 요인) 방송·통신 분야 사업자 대상 규제업무가 많고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사업이 있어 부패 유발 요인은 상존
- (전담인력 부족) 조직 축소에 따라 감사담당 전담부서 폐지 및 담당인력 축소로 반부패 시책의 적극적 추진에 애로
 - *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 시 매우 저조한 평가(미흡)
 - * 인력부족으로 '13년 보조금 회계검사 부실 실시(13개 기관 중 1개 실시)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 반부패 추진여건 분석

강 점

- ① 소규모 조직의 특성상 비위행위 적발이 용이함
- ② 미래부와 협업이 많아 부패행위 가능성 제한

약 점

- ① 업무의 성격상 규제 업무가 많아 부패 유발 요인은 상존
- ② 감사 전담기구 및 인력 부족으로 반부패 시책의 적극적 추진에 애로

기회

- ① 방송·통신 분야의 공정경쟁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부패행위에 대한 긴장감 조성
- ② 3기 위원회 출범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기회

위협

- ① 보신주의에 따른 적극적 행정 축소 우려
- ② 처벌 관대화 경향에 따른 부정·비위 행위 발생 가능성

II. 추진방향 및 전략

□ 추진방향

- (부패제거) 부패척결을 위한 특별감찰을 통해 구조적·관행적 비위 중점점검, 점검시 적발되는 위법행위는 불관용 엄중 조치
 - *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5대 핵심분야 비리중 “국가재정 손실비리” 중점 점검
- (부패차단) 부패예방 및 척결을 위한 제도정비를 통해 부패 구조의 제도적 차단으로 부파행위 발생 가능성 근절
- (의식개혁) 공직자들의 부파척결을 위한 자정운동 등을 통한 청렴의식 고취로 반부패에 대한 획기적 의식 개혁 추진

□ 추진전략

공정하고 신뢰받는 방통위 구현

1. 부파제거

① 구조적 관행적 비위 중점점검

2. 부파구조의 제도적 차단

- ① 부파·비리에 대한 엄정한 처벌시스템 확립
- ② 부파행위 신고자 보호로 반부패 실효성 제고
- ③ 행동강령 개선으로 부파행위 미연 방지

3. 반부패 의식개혁

- ① 부정부파 척결을 위한 자정운동 전개
- ② 공무원 행동강령 내재화로 부파근절 인식 제고

III. 주요 추진과제

1. 부패제거

□ 구조적·관행적 비위 중점점검

- 예산집행, 각종 재정지원 분야 등에서 국민의 부패인식이 높은 '국가재정 누수 부패'에 대한 집중점검
 - 방통위 산하단체 등에 지급된 보조금, 출연금 등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기획점검 및 위반시 엄중 처벌 추진(연중)

2. 부패구조의 제도적 차단

□ 부패·비리에 대한 엄정한 처벌시스템 확립

-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중대한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과 함께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제정(9월중)·운영하여, 형사처벌 확대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신설로 반부패 실효성 제고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 확보 및 신변보호 등을 규정한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9월)
 - 제보자 동의 없는 정보 유출 또는 감사부서 등 유관 업무자의 신고자 정보 유출시 징계 강화 등 규정
 - 위원회 내부 게시판, 홈페이지에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고 감사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는 「상시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

□ 공무원 행동강령 개선으로 부패행위 미연 방지

- 방통위 공무원 행동강령 지침 개정으로 연고관계에 기인한 직무회피대상자 확대로 부패행위 미연 방지
 - 퇴직공무원, 최근 2년 이내 동일부서 근무자, 자연, 학연 등 동기 또는 선후배로 친분관계에 있는 자를 직무회피 대상 추가

3. 반부패 의식개혁

□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자정운동 전개

- “청풍양수(淸風兩袖)* 방통위, 나의 실천으로부터”라는 표어 아래 전 직원이 참여하는 깨끗한 방통위 만들기 자정운동 전개
 - * ‘청풍양수’란 두 소매 안에 맑은 바람만 있다는 뜻으로 청렴한 관리를 비유하는 고사성어
- 청렴워크샵을 개최(10월)하고 분기 1회 이상 전 직원 대상 외부 전문가 초빙 「청렴특강」을 실시하여 전 직원들의 청렴의식 고취
-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청렴실천 의지를 제고

□ 공무원 행동강령 내재화로 부패근절 인식 제고

- 부패 예방을 위해 방통위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지침서를 발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생활화
- “부패-zero 청렴-up 방통위” 실현을 위해 공직자들이 행동강령 준수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청렴일지” 작성 유도
- 부패행위 취약시기인 추석, 연말 등에 “청렴주의보”를 발령하여 반부패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행동강령 준수 유도

IV. 세부 추진사항

1

국가재정 누수 부패 척결

□ 추진배경

- 보조금 등 예산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한 비리근절과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사업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범정부 차원의 국가보조금·지원금 비리근절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로 정부의 부패 척결 추진을 적극 지원

□ 주요내용

- 방통위가 방송사, 협·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21개 1,407억원, 출연사업 8개 142억원을 대상으로 재정집행의 투명성 감사
- 대상기관 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되, 방통위 소관 4개 기관에 대한 검사를 금년에 중점 추진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 회계 투명성 등을 검증
 - * 매년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방통위의 보조금 및 출연금이 지원된 전체 대상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출연 사업에 대한 통제 및 감시 소홀로 재정사업에 대한 통제체계 실효성 미흡
- 정부조직 출범이후 감사 전담인력(1명) 부족으로 비리근절을 위한 감사 미실시로 국가 재정사업에 대한 재정투명성 확보 소홀

□ 감사계획

○ 특별감사 전담반 구성 · 운영

- 반장은 서기관으로 하고 반원은 감사·회계 담당자 및 부서 업무담당자 등 5명으로 구성하는 특별 감사전담반 구성 · 운영

○ 보조금 등 국가재정 손실 비리 집중감사

- 방통위 소관기관에 대해 재무감사(3개 기관) 및 회계검사(4개 기관)에 대해 재정집행의 효율성, 회계 투명성 등을 집중 감사
- 과거 지적사항 개선여부와 인건비·경비 집행, 공사·용역·물품의 계약, 고정자산 및 물품관리의 적정성 등 비리 중점 점검

◇ 재무감사 : 대전·강원·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

◇ 회계검사 : KCA(5개 사업, 211억원), EBS(2개 사업, 250억원), KBS(2개 사업, 147억원), 방심위(3개 사업, 275억원)

- 타부처 소관기관에 대한 보조금·출연금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규모, 감사원 및 타부처 감사여부 등을 고려하여 '15년 이후 단계적 실시
 - * 방통위의 보조금 및 출연금이 지원된 전체 대상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실시

□ 향후 일정 ('14년)

'14. 8월	'14. 9월	'14. 11월	'14. 12월
한국방송통신진흥원(KCA) 5개 사업(211억원)	한국교육방송공사(EBS) 2개 사업(250억원)	한국방송공사(KBS) 2개 사업(147억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개 사업(275억원)

□ 추진배경

- 부패·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 처벌과 함께 고발을 추진함으로써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시스템 확립
-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처벌수준을 정상화하여 더 이상 공직사회에 부패가 자리 잡을 수 없는 환경 구축

□ 주요내용

- 소속 공무원의 범죄발생시 보고대상, 고발주체, 고발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 규정, 고발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범죄행위 규정
- 금품·향응수수 등 중대한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과 병행하여 고발조치를 통해 형사처벌을 확대할 수 있는 지침 제정
 - * 중대 비위 발생시 「방통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적용, 형사처벌을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소속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적 처분으로 주요한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관대화 경향
- 부패공직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지속되어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부패행위자 처벌을 정상화할 필요

※ 국조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권고('14.8)

□ 향후일정

- 법률 자문의뢰(7.22~8.14), 방통위 청렴옴부즈만 자문의뢰(8.27),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정(9월)

□ 추진배경

- 감찰 등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은밀한 부패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 주요내용

-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업무 전담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신고방법, 신고시 처리방법 등을 규정
- 제보자 동의 없는 정보 유출 또는 감사부서 등 유관 업무자의 신고자 정보 유출시 징계 강화, 신고자 포상 방안 등을 규정

□ 현황 및 문제점

- 부패행위의 경우 은밀히 이루어져 내·외부의 감찰 등 통제 체계 만으로는 이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음
-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고질적이고 음성적인 부패 척결 수단 강구 필요

□ 향후일정

- 법률 자문의뢰(8.18~8.25), 방통위 청렴옴부즈만 자문의뢰(8.27), 내부신고자 보호 지침 제정(9월)
- 위원회 내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상시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

* '14. 9월~'14.12월까지 방통위 부정·비리 관련 특별 신고기간 지정·운영

□ 추진배경

- 공직자에 대한 알선·청탁이 출신지역·학교 등 연고관계에서 가장 빈발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의 어려움
- 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개선을 위해 연고관계에 기인한 공직자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자 확대로 부패개연성 차단

□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연고 관계에 따른 직무회피 대상자 확대로 부패행위 미연 방지
- 퇴직공무원, 지연, 학연 등 동기 또는 선후배로 친분관계에 있는 자를 직무회피 대상자에 추가하는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추진

* 현행 직무회피 대상 : ① 본인, 배우자, 혈족과 금전적 이해관계자, ② 4촌 이내의 친족, ③ 2년 이내 재직 단체 또는 그 대리인, ④ 소속기관의 장 등이 정한 자인 경우

□ 현황 및 문제점

- 권익위가 실시한 '13.12월 '공직자 행동강령 설문조사' 결과 공직자에 대한 알선·청탁이 출신지역·학교 등 연고관계에서 가장 빈발
- 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개선을 위해서는 부패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공직자의 직무회피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 필요

※ 국민권익위는 이해관계자 직무회피 대상을 위한 공무원행동강령개정 권고('14.7)

□ 향후일정

- 법률 자문의뢰(8.18~8.25), 방통위 청렴옴부즈만 자문의뢰(8.27),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9월중)

□ 추진배경

-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시키고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반부패에 대한 획기적 인식개선 필요
- “청풍양수(淸風兩袖) 방통위, 나의 실천으로부터”라는 슬로건 아래 전 직원이 참여하는 깨끗한 방통위 만들기를 통해 청렴분위기 확산
 - * ‘청풍양수’란 두 소매 안에 맑은 바람만 있다는 뜻으로 청렴한 관리를 비유하는 고사성어
- 청렴교육, 청렴워크샵, 청렴서약서 등을 통해 공직자들의 반부패 문화 확산 및 자발적 청렴의식 고취

□ 주요내용

- 전 직원들의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청렴워크샵을 개최('14.10월중)하고 반부패 청렴분야 외부전문가 초빙 「청렴특강」을 매분기 실시
- 위원장 등 전 직원들의 청렴서약서를 작성을 의무화하여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고 부패행위 근절 노력 지속

□ 세부 추진내용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
 - 위원회 전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워크숍을 개최하고 외부 전문가 초빙 「청렴특강」을 실시하여 청렴의식 확산
 - 5급 승진예정자, 신규 전입자 대상으로 공직자 생애 주기별 맞춤형 청렴 특별교육을 연간 최소 4회 이상 실시하여 청렴의식 지속 함양

- 청렴의지를 다지기 위한 청렴 서약서 작성

- 모든 공직자들이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청렴서약* 의무적 작성

* 1)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업무 수행, 2) 공정·투명한 업무 처리,
3) 금품수수·접대·편의 등 일체의 청탁 금지, 4) 조직 구성원으로서 품위 유지

- 청렴서약서는 2부를 서명한 후 1부는 운영지원과에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본인이 보관하면서 청렴의무 준수

※ 현재 고위공무원단만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던 것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여 청렴서약서 작성률을 의무화

□ 향후 일정

-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 '14. 9월 중

- 청렴서약서 작성 : '14. 9월 중

- 청렴워크숍 개최 : '14. 10월 중



『청렴 방송통신위원회』 만들기 서약서

본인은 공무원 행동강령,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이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하나.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공정·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하나.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접대·편의 등 일체의 청탁을 받지도 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의 언행이 위원회의 신뢰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조직 구성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대해 서약하며,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하여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14년 8월 일

방송통신위원회 성명 : 000 (서명)

□ 추진배경

-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행동강령 위반사례 근절을 위해서는 공직자 행동강령의 내재화를 위한 생활속 세부실천 방안 마련 필요
- 공직자들의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청렴지킴이” 발간, “청렴주의보” 발령을 통해 생활속 공무원행동강령 내재화

□ 주요내용

-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방통위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청렴 지킴이”를 발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생활화
- “부패-zero 청렴-up 방통위” 실현을 위해 공직자들이 행동강령 준수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청렴일지” 작성 유도
- 부패행위 취약시기인 추석, 연말 등에 “청렴주의보”를 발령하여 반부패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행동강령 준수 유도

□ 세부 추진내용

- 공무원행동강령 내재화를 위한 “청렴지킴이” 제작
 - 공무원행동강령 내재화를 위해 공직자들의 생활속 실천을 위한 알기 쉬운 “청렴지킴이**”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전 직원들의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생활화
 - *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금품수수 행위, 외부강의 · 회의신고, 금전차용 금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
 - 반부패 · 청렴위해 요소 및 자칫 실수할 수 있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행동강령 주요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비위행위 사전 예방

- “부패-zero 청렴-up 방통위” 실현을 위한 “청렴일지” 작성
 - 모든 공직자들이 청렴생활화를 실천하기 위해 직무 관련자를 면담한 경우에는 면담대상, 일시, 장소, 면담목적 등 청렴일지 작성
 - * 청렴일지 작성 양식은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서인 “청렴지킴이” 제작시 부록에 반영하여 전 직원 배포 예정
 - 공직자 스스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청렴한 자기 관리 및 생활속 청렴실천 유도
 - * 공직자가 자율점검하여 행동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소속부서장 및 행동 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 미연 방지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경각심 고취를 위한 “청렴주의보” 발령
 - 청렴 기강이 흐트러질 우려가 있는 명절, 연말연시 등의 상황에서 반부패 청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청렴주의보* 발령
 - * 발령기간, 대표적 위반조항(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시 처벌기준, 관련 위반사례 제시 등
 - 전 직원이 이용하는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주의를 요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처벌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고질적인 행동강령 위반 사항 근절
- ※ 명절, 연말연시 등 자주 발생하는 부패·청렴 위해 요소를 직원들에게 사전 주의·당부함으로써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을 도모

□ 향후 일정

- 청렴지킴이 제작·배포 : '14. 9월중
- 청렴주의보 발령 : '14. 9월중 ('15년 2월·9월·12월 등 취약시기)
- 청렴일지 작성 : '14. 10월중

'14. 9월 추석절 맞이 청렴주의보 발령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청렴주의보'란?

- 명절, 휴가철 등 주요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부패·청렴 위해요소를 직원들에게 사전 주의·당부함으로써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을 도모

청렴주의보 발령



- 발령내용 : '추석 명절 직무관련 선물 수수' 주의
- 발령기간 : '14. 9. 1(월) ~ 9. 19(금)
- 위반조항 :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 금지된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처리 절차
 -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
 -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
 - 행동강령 책임관은 폐기처분, 불우이웃돕기시설 기증, 홈페이지 공고, 매각 등 처리하고 기록·관리

○ 주요 위반시 징계양정 기준

구 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후, 부당처분하지 않은 경우	수동	감봉	정직 · 강등	해임	파면
	능동	정직	강등 · 해임	해임 · 파면	파면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후, 부당처분 한 경우	수동	정직 · 강등	해임		파면
	능동	강등 · 해임	해임 · 파면		파면

○ 주요 위반 사례

< 사례 > 택배로 배달된 명절 선물 수수

- 모 부처 경영기획과장 A는 회식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자, 그를 맞이한 딸이 '누가 옥돔세트(30만원 상당)를 명절선물로 택배로 보내와 상할까봐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고 말하여 다음날 확인해보니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甲연구원 B원장이 보낸 선물임을 알게 됨
- A과장은 처음에는 돌려주려 하였으나, B원장이 용역계약과는 상관없이 평소 팀장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포장을 이미 뜯어 냉동실에 넣어둔 상태라 돌려주기 어렵다 판단하여 위 옥돔세트를 수수함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이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 지도 · 감독 대상사업체 방문 시 제공되는 음료 등
 - * 장시간의 업무협의 도중에 간소한 식사를 하는 경우
 - * 통신시설을 이용하거나 일시적으로 단거리 차량지원을 받는 경우 등
-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 숙박 또는 음식물 (비공식 행사 또는 특정 공무원에게만 제공되는 것은 금지)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회사 로고나 명칭이 부착되어 있는 등 통상적인 증정용으로 사용되는 기념품
 - 세미나 및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홍보용 물품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상담 및 신고처>

- 운영지원과 감사업무 담당 (02-2110-1347)

방통위 청렴 지킴이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매뉴얼)

2014. 8.



방송통신위원회 청렴 일지

연번	일시	장소	면담자	면담목적	면담내용	행동강령 위반 여부

- ◇ 직무관련자와 면담시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고 자율점검하여 행동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소속부서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